

부산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52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5230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3261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1. A

원고, 항소인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C

2. D

3. E

4. F

피고 3,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김상용

변론 종결 2019. 5. 15.

판결 선고 2019. 6. 2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326167 판결

주문

1. 원고 B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B이,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피고 C은 3/9 지분, 피고 D, E, 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6. 5. 18. 접수 제271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 B에게, 피고 C은 84,602,793원, 피고 D, E, F은 각 56,401,8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B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에게, 피고 C은 84,602,793원, 피고 D, E, F은 각 56,401,862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B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50호증의 기재 및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17호증의 기재를 각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B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김종수

판사주은영

별지